

3. 주요요지

○입안내용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변 경 내 용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증 감	
변경 결정	진관 근린공원	은평구 진관의동 산 132-1외 5필지	978,632	983,791	증5,159	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으로 면적 증가

4. 참고사항

○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
 ○이의신청 접수 : 1건(진관근린공원 변경결정)
 -제출자 : 은평구 구산동 213-2 김기택(2층건물 소유자)
 -내 용 : 인공폭포 계획 취소
 (대안1) : 공원결정시 구파발역 도로변에 동일면적 대토 요구
 (대안2) : 공원결정시 현2층 건물 재건축 허용(공원내 매점으로 사용)
 ※ 녹지과에서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 '95년 예산에 보상비 확보(24억원)

○委員長代理 申龍吉 議案番號 1207番, 恩平區 新寺洞 237-148 都市計劃施設 變更決定에 대하여 意見 있으시면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지금까지 審査한 바를 市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

3. 주요요지

○입안내용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변 경 내 용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증 감	
변경 결정	봉산 자연공원	은평구 신사동 237-148	3,806,447	3,802,002	증 555	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봉산자연공원에 편입

4. 참고사항

○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지구

○委員長代理 申龍吉 議案番號 1208番, 銅雀區 大方洞 350-6 일대 및 銅雀區 黑石洞

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제출년월일 : 1994.12.7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

2. 제안이유

○은평구 신사동 237-148 대지 555㎡은
 -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 어린이공원용지로 기부채납된 토지이나
 -경사진 지형, 면적협소, 진입로 불량 등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이 불가하므로 연결된 봉산 자연공원에 편입시켜 하나의 자연공원으로 관리코자 함.

114-12 일대에 대한 都市計劃施設 變更決定에 대하여 意見 있으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지금까지 審査한 바를 市長이 提出한 原案